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국방위원회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박사학위 취득 인정 범위 확대〉
■ 부승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116호)

2025. 9.

국 방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 덕 교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부승찬의원 등 14인
2. 발의연월일 : 2025. 2. 13.
3. 회부연월일 : 2025. 2. 1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자연계대학원의 박사학위 과정 수료자 등을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연구요원은 편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하되 의무복무기간(3년) 중 나머지 기간은 다른 병역지정업체에서 복무하도록 함.

그런데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편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박사학위 논문을 완료하여 사실상 대학원에서 대상자에 대한 박사학위 수여를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위 수여식 등 소속 대학원의 학사일정으로 인하여 2년 이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이 경우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유예기간만큼 의무복무기간이 연장되며, 병역지정업체 변경을 위한 대기기간(3개월 이내)도 의무복무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없어 당사자에게 불합리한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편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박사학위 수여가

확정된 경우 편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7조제3항 후단 신설).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편입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 수여가 확정된 경우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3항 후단 신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7조(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 ① · ② (생략) ③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하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라 한다)은 편입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37조(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 수여가 확정된 경우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④ · ⑤ (생략)	④ · ⑤ (현행과 같음)

☐ 현행법에 따르면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 학위 과정을 수료한 사람은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할 수 있고 해당 요원은 편입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박사

학위를 취득하여야 하며 박사학위 취득 후 남은 복무기간 동안은 기업 부설 연구소 등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 복무하여야 함.

-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2년 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할 경우 3년의 범위에서 박사학위 취득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유예기간은 복무기간에 삽입하지 아니함.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지정업체 및 복무 현황>

(2024.12.31. 기준)

구 분		합 계	자연계대학원	과학기술원
병역지정업체 수		122개	117개	5개
복무 인원	계	3,136명	1,802명	1,334명
	현 역	2,541명	1,417명	1,124명
	보충역	595명	385명	210명

- ☐ 현재 병무청은 「병역법」에 따라 박사학위가 실제 해당 전문연구요원에게 수여되는 날(통상 학위수여식, 졸업식)을 기준으로 하여 2년 내 박사학위 취득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2년 내 박사학위를 취득하느냐에 따라 학위 취득 후 다른 병역지정업체로의 전직 시 소요되는 기간의 복무기간 인정 방식이 달라 2년 내 박사학위 취득 여부가 전체 복무기간에 영향을 미침.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전직 대기기간 인정 여부¹⁾>

구 분	현 행 제 도
2년내 박사학위 취득자	병역지정업체 변경을 위한 대기기간 중 3개월 이내의 기간은 복무기간으로 인정하고, 3개월 이후의 기간은 복무기간으로 인정 안함.
2년후 박사학위 취득자	병역지정업체 변경을 위한 대기기간 전체를 복무기간으로 인정 안함.

□ 개정안은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편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박사학위 논문에 대하여 최종심사 후 학위 승인을 받아 사실상 대학원에서 해당 인원에 대한 박사학위 수여를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대학원의 학사일정으로 인하여 2년 이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에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려는 것으로 사실상 2년 내 박사학위를 취득한 인원이 복무기간 상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함.

<현행 학위수여일 기준에 따른 복무기간 산입 여부 등 예시>

구분	편입 일자	위원회 심의일	학위 수여일	2년 이내 취득여부	학위취득 유예기간	전직 대기기간 복무산입 여부
A	'23. 2. 26.	'25. 1. 16.	'25. 2. 25.	취득	미발생	산입 (최대 3개월)
B			'25. 2. 28.	미취득	발생 (복무기간 미산입)	미산입

1) 「병역법 시행령」 제89조(의무복무기간의 계산) ②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의무복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7. 병역지정업체 변경을 위한 대기기간 중 3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박사과정전문연구요원이 법 제39조제3항제2호 또는 이 영 제85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여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기는 경우에는 대기기간 전부)

□ 다만, 박사학위 취득일은 통상적으로 학위수여식 또는 졸업식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일자를 특정할 수 있는데, 박사학위 취득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일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의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4조²⁾에 따르면 대학원을 둔 대학에 대학원위원회를 두고,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학원위원회에서 각 학과에서 통과된 학위 논문 심사 결과에 대하여 최종 승인을 하고 학위 수여 대상자를 심의·결정 하면 해당 인원은 사실상 학위 취득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대학원위원회에서 학위 수여 대상자를 심의·확정한 날을 박사학위 취득한 날로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봄.

□ 한편, 개정안은 시행일을 ‘공포 후 즉시’ 시행으로 규정하였는데 대통령령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공포 후 6개월’ 경과 후 시행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 국방부 및 병무청은 개정안의 강행규정을 개별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재량규정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2)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4조(대학원위원회) ①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을 둔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및 원격대학에 각각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학과등 또는 전공의 설치·폐지와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대학원에 관한 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원위원회는 학교의 장이 지명하는 7인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문 의 처
02)6788-5307